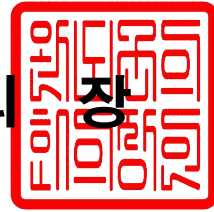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 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 : 조인호 의원

3. 제정이유

- 공사현장에 공사실명제 현수막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발주·시공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주민들에게 공사 전·후에 생기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함

4. 주요내용

-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
- 10억원 이상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

5. 관련법령 : 산업건설기본법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3. 3. ~ 2023. 3. 8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공사실명제)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주요 구조물,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·발주자·설계자·시공자·감독공무원·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5조의2 (공사실명제)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주요 구조물,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·발주자·설계자·시공사·감독공무원·하차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</u></p>